



김윤기 부장  
(본회)

**정** 신의학에서 말하는 “이중구속(double bind)”이란 상대방에게 서로 상이한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 소통이 동시에 부과되는 상황 즉, 서로 모순된 말과 행동이 동시에 전달되는 상황을 말한다고 한다.

예를 들면, 엄마가 평소에 “말”로는 아이에게 학교성적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성적표를 보면서 한숨을 내쉬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이다.

“이중구속”의 의사를 어머니로부터 전달받은 아이는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혼란을 느낀다. 심할 경우 병적인 상태로 발전될 수도 있다. 하지만 엄마는 그것이 자신으로 인해 생긴 문제라고는 상상조차 못한다. 평소 자신은 성적 따위가 제일이지 아니라고 일관되게 말해왔던 사람이라는 확신 때문이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욕망이 아이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중구속”의 현상이 사료정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정부는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친환경산업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농장에서 식탁까지(from farm to table)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배합사료 공장에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 제도를 도입, '05년 11월말현재 20개 배합사료 공장이 정부로부터 HACCP 인증을 획득하였다.

그런데 배합사료 공장은 HACCP 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항생제(항균성물질포함), 유해사료와 농약, 유해독소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그중에서도 항생제 관리를 가장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후기배합사료(우유, 계란 등 시장출하용 축산물 생산대상 배합사료 포함)의 경우 항생제가 검출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합사료 공장은 오랫동안 항생제를 사용하여 왔기 때문에 공장 내에서는 별도시설을 갖추지 않는 한 후기배합사료에서 교차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HACCP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2개 공장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 사료안전성과 항생제사용의 “이중구속”

는 분리·생산하고 단일 공장의 경우 기존설비만을 이용해서 HACCP 규정에 맞게 생산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시설을 추가로 갖추어야 HACCP 인증획득이 가능한 일일 것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안전성 확보 및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배합사료 공장에서 첨가할 수 있는 항생제 수를 53종에서 25종으로 감축하여 '05. 1.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고는 하나 지속적으로 항생제를 배합사료공장에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장촉진용 항생제(치료용보다는 10배 이상 희석하였다고는 하나) 사용량이 연간 약 750톤(2004년기준)에 이르며 이중 상당량을 배합사료 공장에서 지속적으로 첨가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배합사료 공장은 정부의 “이중구속” 행위에 갈팡질팡하고 있다.

배합사료 업계중 일부는 선점을 위해 정부의 정책을 따르면서 분리·생산 체제를 구축하여 전문화 공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 하지만, 단일공장 또는 소규모 배합사료 공장의 경우에는 HACCP 인증을 받고자 하여도 항생제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그림의 떡”이라 할 수 있다.

“안전성 확보 및 위생관리”와 “항생제의 사료 첨가허용”이라는 “이중구속”에 따른 피해를 사료 업체들이 직접적으로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배합사료 업계는 공장에서 항생제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시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기존 설비로도 HACCP 인증 등 정부시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농장에서 질병발생 등 문제점이 나타날 경우에는 사료업계가 아닌 동약 업계와 수의분야에서 전담하고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항생제와 HACCP의 이중구속”의 피해는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처리를 더디게 하여 자연순환형 산업 기반구축을 어렵게 하고, 국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구축도 힘들게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식육중 잔류, 내성균 출현문제 등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난 11월 8일 가칭 “항생제 사용 절감을 위한 연구모임”을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발 빠른 대응을 계기로 정책의 “이중구속”이 아닌 진정 올바른 정책수립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㉟